家計意変世帯対象結構 記入例 가계급변세대 대상 급부·기입례

				┑┗━━							
굵은 선 테-	두리 안에'	만 기입해 주십					급변)]이라. 을 확인해 ²		이 신청서를 쓴 날짜를		
第1号様式の2	!	こうこうせん 高校生	等奨学給付金	ん かけいきゅうへ と(家計急変	ん じゅきゅうしんせいしょ と) 受給申請書	5			기입		
		고등학성	생등장학급부금	ㅏ(가계 급변	.) 수급 신청서·				□친권자(아버지)		
かながわけんりつ 神奈川県立(がっこうちょう ○○学校長	등 가나가와	현립학교인 경-	우	※ 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。		2023年	7月10日	□친권자(어머니)		
かながわけんきょうい		殿 상기 이외	인 경우		<u> </u>				□미성년후견인		
こうこうせいとうしょう	がくきゅうふきん	Copetopio Liverio O受給を申請し							□미성년후견인인 수양부모		
		ソ 受給 を申請し 의 수급을 신청합							□주된 생계유지자		
T-24.92.9	ふりがな	かながわ			高校生 日本成年後	父) □親権	者 (母)		□학생 본인		
	氏名	神奈川	育夫		(4) - 口不风干区	見人 □未成 計維持者 □	年後見人である 生徒本人	里親	□기타 ()		
p → + +×.		∓ 221-0057				日中連絡	Fが取れる電	活番号			
申請者 (保護者等)	住所	横浜市神奈	横浜市神奈川区青木町〇〇-〇〇-〇			090 – ×	90 – xxxx – xxx				
		! 현재, 상기와 C -측란도 기입하십		소지가 있었던	現在の	/19 ()	川崎 주소지가 (() 区 町 村 없다.	보호자(친권자 등)의 주소·성 명·전화번호(낮에 통화 가능힌 것)를 기입하고, 고등학생 등괴 의 관계를 □에 체크		
	ふりがな	かながわ	たかこ		高校生 □親権者((√) □ □ □ □ □ □ □	者(母)				
申請者 以外の	氏名	神奈川	高子		等との □未成年後 関係 □その他(見人 口未成	年後見人である	里親) 区	신청자 이외의 보호자 등이있는 경우는, 성명을 기입하고,고등학생과의 관계를 □에		
保護者等		! 현재, 상기와 C '측란도 기입하십/		소지가 있었던	現在の	719 (25)	 주소지가 (町村	체크 		
】対象となる	高校生等	について									
		등에 대하여							#UU U BU FU UU A OO OO		
-	がない	かながわ	きょうすけ		生年 昭和	19年	5 月	5 ₁₁	│ 학생 성명과 생년월일을 ┣━ │ 기입		
毛	名	神奈川			月日 平成	<u> </u>					
	学校の	(国公立)	神奈川県	立		等 学	校	年			
在学する学校	名称	課程	口 全目制	□定	時制 □通	言制	□専攻科	Ļ	<u>인정 기준일에</u> 재학하고 ─ 있는(있던) 학교에 대해 기입		
	在学期間		令和5 年	4月 1日	~ 年	月	 目		— ㅆㄴ(ㅆ止/ ㅋㅛ에 데에 기ㅂ		
	州间	学校名	平成	年 月 日	学校の種類・課程		中に給付金を受				
過去の高等		立	平成	~ 月 月		なし	1 = 2 = 3		■ 인정 기준일 이전에 상기		
における在	学期間	学校名	平成	年 月 日	学校の種類・課程		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なし 1回 2回 3回 4回 不明		이외의 고등학교 등에		
: F31 / Z	くとう じょうきょ	立	平成	年 月 日	1				재학하고 있던 경우에 기입		
2】扶養親族	美等の状況	について ※	非課税世帯の		てください。				<u>-</u>		
·양 친족 등의 	상황에 대하	·여】※ 비과세 서 	대만 기입해 주 	십시오. 							
続柄		氏 名	生年月日	職業・学権	交名・学年等	200.60	給付金の	備考			
						課程	申請の有無	加与			
【고등학생	등] ※ "대	상이 되는 고등학	학생 등″이외으	고등학생 등	등을 부양하고 있는						
姉	1	상이 되는 고등학	학생 등" 이외으 H17.12.12		등을 부양하고 있는 神奈川県立 〇〇	를 경우에 : 通信制 專攻科					
姉	1			国公司	等学校 3 年 □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		이저 기즈이 쳐 때		
柿	神	奈川 英子	H17.12.12	国·公·私立	高等学校 3 年 日 高等学校 3 年 日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 □無		인정 기준일 현재, 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		
姉 【상기 이외으	神 :	奈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	H17.12.12	国·公·私立	等学校 3 年 □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 □無		인정 기준일 현재, 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		
姉 【상기 이외으	神: 기형제자매] 기업하십시오	奈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	H17.12.12 현재, 고등학생	国·公·私立	高等学校 3 年 日 高等学校 3 年 日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 □無		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		
姉 【상기 이외으 는 경우에 7	神의 경제자매] 입하십시오	奈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 :	H17.12.12 현재, 고등학생	国公 A 立 A 立 A 立 B 이외에 15	高等学校 3 年 日 高等学校 3 年 日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 □無		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		
姉 【상기 이외으 는 경우에 7	神의 경제자매] 입하십시오	奈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 :	H17.12.12 현재, 고등학생 -	国公 A 立 A 立 A 立 B 이외에 15	등을 부양하고 있는 神奈川県立〇〇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 □無		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		
姉 【상기 이외의 는 경우에 7 兄	神 의 형제자매] 이입하십시오 神	奈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 :	H17.12.12 현재, 고등학생 H13.8.8 H14.9.9	国公 A 立 A 立 A 立 B 이외에 15	등을 부양하고 있는 神奈川県立〇〇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교 有 □無 □無		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		
姉 [상기 이외으는 경우에 7 兄 兄	神: 의 형제자매】 이입하십시오 神: 神:	奈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 :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H17.12.12 현재, 고등학생 H13.8.8 H14.9.9	国公 A 立 A 立 A 立 B 이외에 15	등을 부양하고 있는 神奈川県立〇〇 高等学校 3 年	= 경우에 面信制 画序改科 上記以外 画序は 信解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□ 有 □ 無 □ 있는 형제:	자매가 있	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		
姉 (상기 이외으는 경우에 기	神: 비형제자매] 비입하십시오 神 神:	京川 英子 기준이 되는 날 : ** ** ** ** ** ** ** ** ** ** ** ** **	H17.12.12 현재, 고등학생 H13.8.8 H14.9.9	国公 A 立 A 立 A 立 B 이외에 15	등을 부양하고 있는 神奈川県立〇 을 高等学校 3 年	= 경우에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	기입하십시오 □ 有 □ 無 □ 있는 형제:		부양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 및 15세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		

[4]		きる かけいきゅうへん じょうきょう 等の家計急変の状況について				
		등의 가계급변 상황에 대하여. 다음 사람의 가계 (급변) 상황의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. 나의 □에 체크하십시오.)				
1	Ŀ	<mark>친권자(부모) 2명분 (단신 부임의 경우라도 친권자 2명분을 제출해 주십시오)</mark> 학생이 미성년(18세 미만)이고 친권자(부모)가 두 명 존재하는 경우				
		친권자 1명분 (친권자가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,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인 경우는 그 사람은 제외한다.)	١,			
2		・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명인 경우 ・친권자는 2명이지만 가정 폭력이나 양육 포기, 실종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친권자 1 명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				
3		미성년 후견인 ()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)		①에서 ⑥까지의 어 <u>!</u> 하나에 체크		
4	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 (이하 '주된 생계유지자'라고 한다) (양친 등) 2명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한 경우로, 성인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게 변경이 없는 경우		이디에세그		
	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(주된 생계 유지자) 1명 ·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·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,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		_		
5		· 합복 시점에 복용이 중인이었지만, 구된 공계규지지기 존세하는 경구, ·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·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				
6		학생 본인 ㆍ 친권자,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, 학생 본인이 성인인 경우 등				
[5	」 書約・委	任欄 ※ 신청자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.				
	나음 사항	을 확인하고 서약(위임)합니다. 신청자 성명 神奈川 育夫		기재되어 있는 내용 화이하시 호에		

○ 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. 또한 이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는 가나가와현교육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
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에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

- O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입소시설 조치비(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(모자 생활 지원시설의 고등학생 등은 제외))의 지변 대상이 아닙니다.
- O 수업료 이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**납부금 등에 미납분이 있을 때는**, 제가 지급 받는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을 그 미 납분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.
- 본인의 세대는 현재, 생활보호법(1950년 법률 제144호) 제36조 규정에 의한 **생업부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.**(대 상인 고등학생 등이 전공과에 재학하는 경우는 제외)
- 【2】"부양 친족 등의 상황에 대하여" 난에 기입한 고등학생 등 및 형제자매를 **본인이 부양하고 있습니다.**

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, 신청자가 서명하십시오.

<u>서명이 없으면 지급할</u> <u>수 없습니다.</u>

<学校使用欄> <学校受付印>	학교에서 사용하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.		
学校の名称	学校長の氏名	職印	